

● 중소기업부공고 제2024-598호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을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의 반영 및 사건의 이관, 자율적 조정결과 통보, 자구수정 등을 통해 동 지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제3항)

-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개정예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기청에서의 사건 접수 절차 개정

나. 사건의 이관 (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4항)

- 중기부 또는 관할 지역 이외 지방중기청으로 접수된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의 이관 절차 및 복수지역 분쟁 사건의 본부 이관절차 규정

다. 자율적 조정 결과통보 (안 제21조제5항)

- 지방중기청장이 의뢰한 자율적 조정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 절차 마련

라. 처분절차의 정비 (안 제28조제1항, 안제28조제6항)

- 지방중기청장이 처분한 법 위반행위 중 과태료 처분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장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 및 가중처분 판단 규정 마련

마. 조사불개시 사유 정비 (안 제8조제1항제8호 내지 제9호)

- 피요청인 또는 조사대상기업이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공정거래법」 제80조에 따라 공정위가 심사절차 개시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자구 수정 (안 제8조제1항제7호, 안 제10조 등)

- 인용하는 조항의 표현방식 수정

사. 기타사항 (안 제24조제5항)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처분은 중기부장관의 권한으로 관련 조항의 오기 정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불공정거래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e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 044

- 204 - 79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